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 2011 ~

제출연월일			2011. 6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○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'귀농인', '귀농세대'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(안 제1조, 제2조).
 - 귀 농 인 :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
 - 귀농세대: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 (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
- 나.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'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'의 기능과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).
 - 위원회 기능
 -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
 -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
 - 지원사업의 심사, 결정 및 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
 -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방안 및 고충처리 협의와 귀농 홍보 등

○ 위원회 구성: 15명 이내

- 위원장: 부군수, 부위원장: 위원 중 호선

- 위 원 : 당연직 5명, 위촉직 10명 이내

○ 위촉위원 임기 : 2년(연임가능)

○ 회의개최 : 정기회의(반기별 1회), 임시회의(위원장 또는 재적위원

1/3 이상 요구 시)

다. 귀농 상담실의 설치·운영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, 귀농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.

○ 귀농 상담실 설치·운영

- 설치 : 농업기술센터 내

- 기능 : 귀농에 대한 자문·정보제공·고충처리·애로사항 해결.

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, 정보 교류 및 협력을

위한 멘토링 연결,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등

- 운영 : 인력 및 정보를 갖추고 상설로 운영

○ 귀농인 지원사업

-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,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
-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
- 안정적인 귀농 유도를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
-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사업
- 읍 면 및 작목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
-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
-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
-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과 선정 및 시상

○ 귀농인단체 육성 및 지원

- 귀농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
라. 그 밖에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,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,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보고·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금의 집행·관리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규정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 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 및 제39조
- 「농림사업 시행지침」 및 「귀농·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」
- 나. 예산조치 : 2011년 본예산 확보(442백만원)
- 다. 합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- 라. 그 밖에
- 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11. 4. 1. ~ 4. 20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·사회·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,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2. "귀농인"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귀농세대"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(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.
- 4. "지원"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 하는 모든 행정적·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.

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

제3조(설치)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제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
 - 2.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
 - 3. 귀농인 지원사업의 심사, 결정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
 - 4.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
 - 5.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
 - 6.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
- **제6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촌활력과장, 산림녹지과장,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- 1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- 2.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 · 직원
 - 3. 농업인단체의 대표
 - 4. 성공적인 정착을 한 귀농인
 - 5. 그 밖에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- **제7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다.
- 제11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- 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귀농 지원

- 제14조(귀농 상담실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 센터에 귀농 상담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귀농에 대한 자문, 정보제공, 고충처리, 애로사항 해결 등
 - 2.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
 - 3. 선배 귀농인·지역 작목반·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
 - 4. 귀농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
 - 5. 그 밖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
 - ② 귀농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,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.
- 제15조(귀농인·귀농인단체 지원사업)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,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
 - 2.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
 - 3. 농촌체험 후 안정적인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
 - 4.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사업
 - 5. 읍 면 및 작목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
 - 6.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
 - 7.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
 - 8.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과 선정 및 시상
 - 9.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귀농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- 제16조(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)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,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 - 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4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
 - 5.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7조(사후관리)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1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,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.

관계 법령

□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[시행 2011. 3. 9] [법률 제10449호, 2011. 3. 9, 일부개정] 농림수산식품부(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), 02-500-1711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- 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나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
- 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- 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
- 나. 어업인: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3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- 4. "생산자단체"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5. "농어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가. 읍·면의 지역
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- 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- 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나. 수산물: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7. "식품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

- 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
- 8. "식품산업"이란 식품을 생산, 가공, 제조, 조리, 포장, 보관,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9. "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"이란 농어업·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.
- 가. 식량의 안정적 공급
- 나.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
- 다.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
- 라.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
- 마. 생태계,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
- 바.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
- 10. "수산자원"이란 수중(水中)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.
- 11. "어장"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, 해수면,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 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 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, 농어업경영의 효율화,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식품산업 및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소비자는 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,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·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, 경영지도,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(家族農漁家)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,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39조(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,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,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·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.
- 1. 토양·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
- 2.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
- 3.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,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 원(어선·어장을 포함한다)의 폐기·감축 등을 위한 지원
- 4.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
- 5.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 감을 위한 지원

- 6.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(轉業)하거나 재취업(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
- 2.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
- 3.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